「평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❍ 제 안 자 : 이창열 의원
- ❍ 제안일자 : 2026. 09. 30.
- ❍ 회부일자 : 2026. 10. 08.
- ❍ 상정일자 : 2026. 10. 13.

2. 제안이유

- ❍ 평창군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❍ 조례의 목적 및 의료비, 기준 중위소득 등 용어를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❍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 의료비 지원의 근거와 지원대상을 규정(안 제3조)
- ❍ 지원대상 의료비의 범위 및 지원 제외 항목을 규정하며 동일부위에 대한 지원 횟수를 규정(안 제4조)

❍ 의료비 지원 신청 및 보건의료원장의 검토·보고 절차를 규정(안 제5조)

❍ 의료비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6조)

❍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(안 제7조)

4. 종합검토의견

❍ 본 조례안은 평창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❍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와 「노인복지법」 제27조의4에서 규정한 노인성 질환 치료비 지원 근거를 종합해 볼 때,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.

❍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거주기간·연령·소득 등 합리적인 지원 요건을 설정하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국가 및 타 기관의 지원사업을 우선 적용하는 등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, 안 제4조에서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(좌·우 각각 100만원 한도)과 안질환 수술(좌·우 각각 30만원 한도)의 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여 재정

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였음.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의료비 지원신청 절차와 처리기한을 구체화하고 안 제7조에서는 부정수급 환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정 지원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.

❍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기에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,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붙임 관계 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(생 략)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□ 노인복지법

제27조의4(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,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, 지원의 대상·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노인복지법 시행령

제20조의2(노인성 질환의 범위, 의료지원의 대상·기준 및 방법 등) ① 법 제27조의4 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③법 제27조의4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